

국비 지원비율 명시 결국 무산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제1장 제2조에는 '동계올림픽특별법 제2조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폐회식장을 말한다'는 조항을 뒤 논란이 됐던 개·폐회식장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모법(母法)인 특별법이 경기장(75% 이상 국비) 외의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명시한 바 없어 전액 지원 여부는 향후 조율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도 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시행령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및 올림픽특구 내 경관형성

기획재정부 반대로 난항 개·폐회식장은 조항에 포함 정부,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이유로 구체화 안 해 지역업체 우대 기준 명시... 대통령 재가 후 20일 공포

정비대상에 대한 각각 70%와 50% 이상의 국비 지원 조항을 담으려 했지만, 정부는 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구체화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제4장 제16조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에서 '대회 직접관련시설(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비율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했다. 지역업체 우대와 관련해서는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는 등으로 명시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소관으로 추진해야 할 홍보관 등 IOC 관련시설, 대회조직위 사무실, 대회물자창고, 안전통제센터, 소송통제센터, 대회 관계자 수송터미널, 대회 버스타고 및 차량 부대시설 등도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20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민왕기자 wanki@

정부 건설경기 회복에 8조원 지원

'브릿지론' 1년간 재시행 등 금융 지원방안 확대 건설업계 "민간공사 혜택·주택시장 회복 시급"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공공사 물량 부족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총 8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실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의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업 금융 지원 방안을

대부분 확대 또는 연장했다.

우선 이달부터 건설사가 자산을 담보로 3조원 규모의 회사채담보증권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며 공공공사의 대금 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브릿지론'도 1년간 재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대책을 일제히 확대한 것이다. 이는 올해 2분기 국내

건설 기성 실적이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발주된 총 공사금액은 5,882억4,112만원으로 2009년 9,041억3,846만원의 65.1% 수준으로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다 채권을 담보

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브릿지론'도 공공공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하고 건설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주택거래시장 회복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의 대규모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줄어들고 있는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운기자 faw4939@kwnews.co.kr

“국비지원 없으면 올림픽 식수시설 건설 못한다”

최문순 지사,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불가

속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필수 시설인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본지 8월13일자 2면)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는 건설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식수전용 저수지 및 상수도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에 대한 국비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식수전용 저지와 상수도시설 사업은 환경부의 국고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 건설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문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담회에서 “대관령식수전용저수지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필수 시

설”이라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도관계자는 “도로 내려오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연간 1300억원 규모지만 관련 예산의 80%는 18개 시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나머지 20%도 일선 시군의 신규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관령식수전용 저수지는 대회관련 시설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추정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 동안 필요한 일일 용수량은 생활용수 1만5000t, 하천용수 8000t 등 2만3000t이지만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대관령면 지역에 하루에 공급되는 용수량은 4000t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용수확보를 위해 대관령면 황병산 계곡에 사업비 830억원을 들여 저수량 304만t 규모의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종인

올림픽특별법 시행령 빠진게 더 많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이 우여곡절 끝에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1면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 관련 시설 건설 및 대회운영에 관한 지원사항, 대회 개최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시행절차 등을 담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은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늦은 오는 20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대회직접관련시설로 경기장, 진입도로, 개·폐회식장 등을 정의하고,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국

국무회의 통과... 20일쯤 공포 예정

특구 개발·지역기업 우대 조항 없어

비 75% 이상 지원, 경기장 진입도로는 국비 70%를 지원하기로 명시했다. 다만 개·폐회식장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수훈련시설 △선수촌 △미디어촌 △약물검사시설 △국제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전기·전자 통신시설 등 나머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율도 명시되지 않았다.

올림픽파크, 겨울스포츠콤플렉스 건립, 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시설 등은 아예 국비 반

영에서 제외됐다.

국비 지원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한 만큼 오히려 지원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른 지역의 국제스포츠 행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을 이유로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강원도의 입장만 받아들여주겠다는 부정적인 의

견도 나오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과 관련, 도는 특구개발 사업의 비용보조와 특구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재정 지원 등의 지원 비율 명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기업 우대조항 역시 명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기업우대'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통해 도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인